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
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민권익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공채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환수금액, 제재부가금, 가산금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분할납부) ① 행정청은 환수금액,
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
(이하 “환수금액등”이라 한다)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
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등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
각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.

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액등의 분할납부가 허용된 납부의무자
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환수금액
등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납부하기로 한 환수금액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
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환수금액등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
고 인정되는 경우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하는 환수금액, 제재부가금, 가산금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8조의2(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 등의 분할납부) ① 행정청은 환수금액,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(이하 “환수금액등”이라 한다)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등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각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.</u> <u>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액등의 분할납부가 허용된 납부 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환수금액등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</u> <u>1. 분할납부하기로 한 환수금액등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</u> <u>2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</u>

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환수 금액등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,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2개월 이내로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7644